

## 일리노이 EPA 장애인 차별 금지 계획

일리노이 환경보호국(이하 일리노이 EPA 또는 기관)은 1973년 제정 재활법(Rehabilitation Act) 504조와 1990년 제정 및 2008년 개정 미국 장애인법(ADA)에 의거하여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기관이 시행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에 전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EPA는 장애인이 기관의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에 참여하거나 이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편의 시설이나 변경<sup>2</sup>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EPA의 정책에 따라 자격을 가진 장애인은 일리노이 EPA가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에 대한 접근이나 참여를 거부당해서는 안 됩니다. 일리노이 EPA는 자격이 있는 장애인<sup>3</sup>의 요구에 부합하는 가장 통합된 환경에서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을 운영합니다.

일리노이 EPA는 적절한 시점에 개인의 사생활과 독립성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각 장애 또는 난청이 있는 개인과 필요에 따라 기타 개인에게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나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통역사 등의 적절한 보조적 지원과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장애인은 편의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개인은 차별적이지 않고 통합된 환경에서 일리노이 EPA의 서비스와 활동에 전적으로 참여하거나 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에 부합하는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 EPA와 모든 직원은 ADA 또는 504조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ADA 또는 504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타인을 지원하거나 돕는 모든 개인을 상대로 강압, 위협, 보복 또는 차별을 가하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과 정책은 일리노이 EPA 산하의 모든 수혜 기관, 대리 기관 및 용역 기관 전체에 적용됩니다.

### 정의

A. 장애인이란 다음 상태를 가진 개인을 의미합니다.

1. 일상 생활에서 중요한 활동을 한 가지 이상 크게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경우,
2. 그러한 장애의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sup>1</sup> 일리노이 EPA는 또한 장애 등에 따른 고용 차별을 금지합니다. 일리노이 EPA의 고용 차별 금지 정책은 '일리노이 EPA 직원 안내 책자(Employee Handbook)' 제1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up>2</sup> 재활법 제504조는 합리적 편의, ADA 제2장은 합리적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문서에서의 '편의'는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합니다. <sup>3</sup> 40 C.F.R. § 7.55 참조.

3. 그러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B. 적격한 장애인은 (편의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리노이 EPA의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에 참여할 기본적인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개인입니다.
- C. 편의란 규칙, 정책 또는 관행에 대한 합리적 변경을 포함하는 조정; 건축, 통신 또는 교통 장벽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환경적 조정; 보조적 지원 및 서비스 등을 의미합니다. 편의의 예로는 서기, 통역사, 산만하지 않은 환경, 점자 자료, 테이프, 컴퓨터 지원 교육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차별 금지 코디네이터(Nondiscrimination Coordinator)**

차별 금지 코디네이터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504조<sup>4</sup> 및 ADA<sup>5</sup>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일리노이 EPA가 기울이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지원합니다:

- A. 일리노이 EPA는 적합한 형식(예: 확대, 점자, 오디오 테이프)을 도입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1. 개인이 장애 상태를 공개하고 일리노이 EPA의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에 형평성 있게 접근하고 참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편의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
  - 2. 개인의 사생활과 독립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절차;
  - 3. 편의 제공 절차.
- B. 일리노이 EPA는 장애를 가진 개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과 범위에 관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운영 지침의 하나로 데이터 수집 요건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 C. 일리노이 EPA는 자격을 가진 장애인이 가장 통합되고 적절한 환경에서 일리노이 EPA와 그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 D. 일리노이 EPA는 기관의 차별 금지 프로그램 및 정책에 명시된 고충 처리 절차를 활용하여 ADA 제2장 또는 제504조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불만을 즉각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이러한 고충 처리 절차는 일리노이 행정법 제4장 925항(일리노이 EPA - 미국 장애인법 고충 처리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편의 요청 거부에 대한 이의 제기 등 예상되는 모든 불만 또는 불편을 처리합니다.
- E. 일리노이 EPA는 ADA와 제504조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

<sup>4</sup>40 C.F.R. § 7.85(g): '일리노이 EPA가 1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40 C.F.R. 7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조정할 최소 한 명의 인원을 지정해야 한다.' 참조.

<sup>5</sup>EPA는 1973년 제정 재활법 제504조를 시행하지만 ADA 제2장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ADA에 대한 참조는 일리노이 EPA가 연방 재정 지원 수혜 기관으로서의 지위와는 관계 없이 ADA 제2장을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포함되었습니다.

F. 일리노이 EPA는 장애인과 법 준수 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직원 대상 교육을 진행합니다.

### 시설 접근성

일리노이 EPA는 기관의 자체 평가를 통해 모든 일리노이 EPA 시설에 대해 '공공 시설'로서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합니다. 일리노이 EPA는 각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40 C.F.R. § 7.65에 부합하는 외부 시설에서 자체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운영합니다.

#### A. 기존 시설:

1. 기존 시설에 대한 구조 변경은 기타 방법으로 프로그램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타 방법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a. 사례 검토 후 설비 또는 시설 재설계.
  - b.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한 기능을 안내하는 적절한 안내판 설치.
  - c. 접근 가능한 현장에 직원이나 서비스 배정.
2. 일리노이 EPA는 장애인을 위한 대피 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B. 신규 건축:

일리노이 EPA가 사용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구축하는 시설이나 시설의 일부는 반드시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설계와 건축을 고려합니다. 기존 시설을 개조하는 경우, 최대한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설계와 건축을 고려합니다.

#### C. 외부 시설:

일리노이 EPA의 외부 시설 사용을 위한 용역 또는 임대 계약은 접근성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에서 운영되는 모든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리노이 EPA가 전적으로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기관은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이 전반적으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편의:

일리노이 EPA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모든 개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 혜택을 거부당하거나 참여에서 제외되거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개인은 일리노이 EPA가 편의 요청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특수한 요구에 맞는 편의를 요청할 책임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일리노이 EPA의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에 접근하기 위한 모든 보조적 지원, 서비스 또는 기타 편의는 항상 준비되어 있거나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편의는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의 성격에 대한 근본적인 변경, 기본 프로그램 또는 허가 요건의 거부, 인증 요건 위반, 일리노이 EPA에 대한 과도한 회계적 또는 행정적 부담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일리노이 EPA는 적절한 편의 시설을 결정할 때 개인의 희망 사항을 고려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 필요한 서류와 기관의 전문성 등을 고려합니다.

일리노이 EPA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편의 시설, 지원, 서비스, 기회 또는 혜택을 받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 **고충 처리 절차 요약**

'고충'은 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활동 또는 서비스에 참여하거나 그 혜택을 수용할 기본적인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장애인이 ADA에 의거하여 기관의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이나 그 혜택을 배제 또는 거부당하거나 기관의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제기하는 불만 사항입니다.

개인이 서면을 통해 정식으로 불만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또는 차별을 당한 후 180일 이내에 해당 용도의 고충 제기 양식을 작성하여 차별 금지 코디네이터(Nondiscrimination Coordinator)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차별 금지 코디네이터의 적절한 검토를 위해 고충 제기 양식을 완전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일리노이 EPA는 요청에 따라 고충 제기 양식 작성에 도움을 드립니다. 차별 금지 코디네이터 또는 그 대리인은 고충 내용을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차별 금지 코디네이터는 불만을 제기한 개인과 기관 책임자에게 고충 제기 양식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답변서를 송부해야 합니다.

기관은 개인이 정식으로 고충을 제기하려는 의사를 통보받은 즉시 해당 개인에게 일리노이 행정법 제4장 925항에서 입수 가능한 고충 처리 절차서 사본과 고충 제기 양식을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고충 제기 양식 사본은 이 문서에도 첨부되어 있습니다.